전남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 - 123호

2022년도 전남지방우정청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

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(시험의 공고)에 따라, 2022년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5월 2일

전남지방우정청장

1. 시험일시: 2022. 5. 14.(토) 10:00~11:20 (80분)

※ 입실시간: 9:20 (8:00 이후 시험실 개방)

2. 시험장소: 광주광역시 소재 5개 시험장

구 분	응시번호	시험장	시험장 주소
일반	134301~134700	금파공업고등학교	광주 북구 금호로 80
일반	134701~135100	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	광주 북구 설죽로 433
일반	135101~135480	일곡중학교	광주 북구 설죽로 570
일반, 장애인, 저소득, 도서 등	135481~136909	광주공업고등학교	광주 북구 설죽로315번길 14
코로나19 확진자		전남지방우정청	광주 서구 계수로 41

※ 응시번호별 시험장소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「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장소」를 열람하여 **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사고 등으로 시험장소(학교)가 폐쇄될 경우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하며, 변경장소는 개별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안내드리겠습니다.

3. 응시자 준수사항

《 일반사항 》

가. 시험당일 09: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 (08:00 이후 시험실 개방)

※ 손 소독 및 발열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[코로나 19 대응 수험생 행동수칙](붙임 1)에 따라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, 손소독 및 발열검사,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◆ **(출입구 관리)** 시험장 주출입구를 단일화하고, 수험생, 시험감독관 등 시험장 출입자 전원에 대해 손소독 및 발열검사(비접촉식 체온계) 실시

- 발열검사 및 2차 문진 후 감염의심여지(발열 37.5℃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)가 있는 수험생은 예비시험실에서 분리 응시
- 시험실의 출입문·창문 등을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를 할 예정이므로 각자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옷차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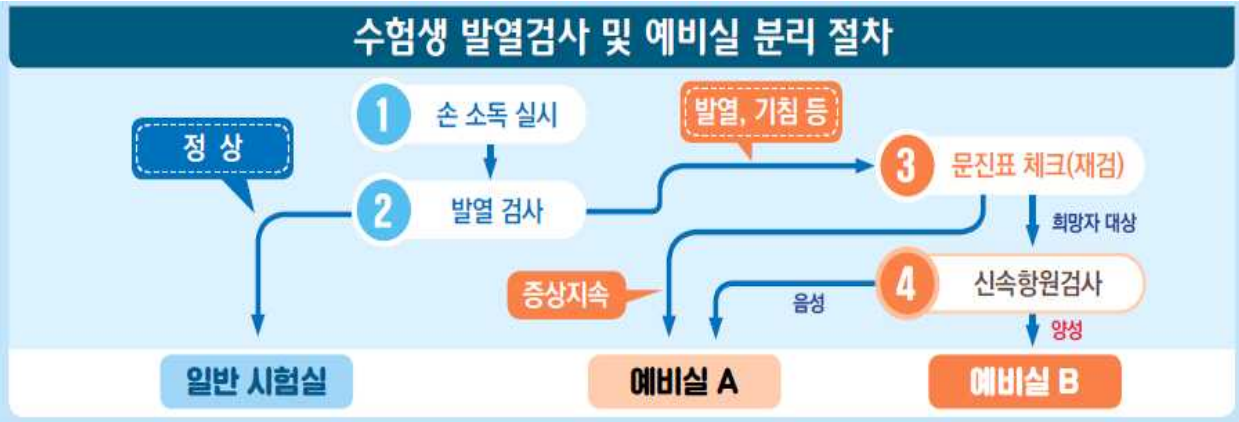

다. 시험 전일까지 **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 ※ 단,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

라. **수험생 본인에게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**할 수 있으며, **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**

- 시험일 현재(5.14.(토))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,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사전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(08:20 이후 시험실 개방)

※ 코로나19 격리해제, 완치된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에서 응시

※ 확진자 시험 응시방법은 **[8. 코로나19 확진자 시험 응시 절차 안내] 참고**

마.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.(차량탑승 수험생은 정문 하차 후 개별 출입)

바. 본인 확인을 위해 **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**(주민등록증,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)을 **소지해야** 합니다.

※ **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 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**입니다.

※ 응시표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(http://kpost.jinhakapply.com)→응시표 출력페이지에서 출력 가능

사.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,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(득점 불인정 등)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아. 시험시간 중 통신,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(휴대전화, 태블릿PC, 스마트워치, 이어폰, 스마트밴드, 전자담배,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, 디지털 카메라, MP3 플레이어, DMB 플레이어 등)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.

자. **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**,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(카페인·탄산음료 등)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,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.

차. **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**(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볼펜 똑딱소리, 반복적인 헛기침 등)는 **자제**하여 주시고, **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**,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카. **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**에게 있습니다.

-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시간 예고,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,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(스마트워치, 스마트밴드 등)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

타. **시험 종료 후에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**, 배부된 **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
파. 지진 발생 시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을 계속 보거나 책상 아래 또는 시험장 밖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. 진동을 감지한 경우 침착하게 방송 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
《 답안지 기재 및 표기 》

가. 득점은 OCR스캐너 판독기 결과에 따라 산출하며,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「**컴퓨터용 흑색사인펜**」(**사인펜에 "컴퓨터용"이라고 표시**)을 사용하여 반드시 〈보기〉의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
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. 특히,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,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,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또한,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(당해시험 무효처리 등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〈보기〉 올바른 표기 : ● 잘못된 표기 : 

※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

나. 적색볼펜, 연필,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표기를 하여 중복 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과 표지의 과목순서 간의 일치 여부, 문제 누락·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라.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,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마.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**하나의 답만**을 골라 그 숫자에 **"●"로 표기** 하여야 하며,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-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며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 주어야 합니다. 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
-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바.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(▮▮▮▮▮)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.

《 부정행위 등 금지 》

가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~7호 위반행위

■ **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,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**

○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○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○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○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○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○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나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~4호 위반행위

■ **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**

○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○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○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○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대화를 하는 행위
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
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-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
-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
다.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답안,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표기(기재)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교체 후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4. 정답 이의제기 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등 안내

가. 필기시험 정답 이의제기 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안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정답가안 공개: 2022. 5. 14.(토) 18:00
- 정답가안 이의제기 기간: 2022. 5. 14.(토) 18:00 ~ 5. 18.(수) 18:00
- 최종정답 공개: 2022. 5. 25.(수) 18:00

※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(https://www.koreapost.go.kr) 게시

5. 가산점 비율 확인 및 표기 안내

■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(2022. 5. 13.)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.
■ 가산점 종류 및 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,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■ 가산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(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)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■ 취업지원 대상자는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(지)청, 보훈과, 의사상자 등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의 여부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(2022. 5. 13.)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※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☎ 044-202-3255
■ 시험과목(4과목)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(40점 미만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.

가.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비율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	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**1개만 적용**
의사상자 등 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	

나. 취업지원대상자

○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을 가산합니다.

※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

※ 선발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

※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,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(☎1577-0606)에 확인

다. 의사상자

○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(5% 또는 3%)을 가산하며,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.

※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

※ 선발 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

※ 의사상자 등 등록 여부,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(☎044-202-3255)에 확인

6.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

가.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전남지방우정청 홈페이지(http://www.koreapost.go.kr/jn)와 원서접수 시스템(http://kpost.jinhakapply.com)에 게시합니다.

- 합격자 발표일: 2022. 6. 21.(화)

7. 코로나19 관련 자진신고 등 안내

가. 코로나19 확진으로 방역당국의 격리대상자로 지정되었을 경우, 또는 해외 국가 방문으로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, 해당 사항을 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에 자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필요할 경우 방역·출입국 당국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회·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자진신고 등록방법: 해당 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담당에게 유선 신고(응시번호, 성명, 격리시작일 및 종료일, 휴대폰번호 신고 / 격리통지서 사본 팩스(또는 사진문자, 메일 등) 송부) (FAX)0505-005-1827 (e-mail)teresa0522@korea.kr

※ 자진신고 등록기간: 5. 9.(월) ~ 5. 13.(금) 19:00 / ☎062-600-4733

8.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안내

가. **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수험생의 시험응시 권리 보장과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시험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.**

- 시험일 현재(5.14.(토)) 확진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이 아닌 방역조치된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하여야 합니다.

- 해당 수험생은 반드시 지방우정청으로 자진신고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- 코로나19 격리해제, 완치된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에서 응시합니다.

나. 시험응시 절차: ① 신고 → ② 응시대상 확인 → ③ 시험장 이동 → ④ 시험응시

① (수험생 신고) 확진으로 판정을 받는 즉시 지방우정청에 알림

- 확진으로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즉시 지방우정청에 유선으로 자진신고 하여야 하며, 시험 전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험 전일 19:00까지 신고하여야 함

※ 자진신고 등록방법: 해당 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담당에게 유선 신고(응시번호, 성명, 격리시작일 및 종료일, 휴대폰번호 신고 / 격리통지서 사본 팩스(또는 사진문자, 메일 등) 송부)(FAX)0505-005-1827 (e-mail)teresa0522@korea.kr

※ 자진신고 등록기간: 5. 9.(월) ~ 5. 13.(금) 19:00 / ☎062-600-4733

- 수험생은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본인이 지자체 담당자(보건소 확진통보 담당자)에게도 시험응시사실을 알려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을 받을 것

② (응시대상 확인)

- 재택치료자: 수험생의 자진신고(시험응시 신청)사항 확인 후 시험응시 절차 안내
- 입원·입소 치료자: 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지방우정청 제출, 우정청은 시험응시 절차 안내

③ (시험장 이동) 개인차량,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지정 시험장으로 이동 (대중교통 이용 금지) ※ 별도시험장 개방시간: 08:20

④ (시험응시) 별도시험장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장 입실 및 응시

※ 개인별 지정 별도시험장 및 세부 응시절차는 원서접수 시 등록한 수험생의 전화번호로 개별 안내 예정

※ 별도시험장 응시대상이 많을 경우 시험전일(5.13.(금)) 19시 이후에도 전화 연락 가능

다. 기타 유의사항

- 5.2.(월) 현재 운영 예정 별도시험장은 전남지방우정청입니다.
- 확진 수험생의 시험장 배정은 확진 규모, 확진 일자, 별도시험장 수용 인원 등을 감안하여 배정할 예정이며, 필요한 경우 처방받은 먹는 치료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- 확진 수험생이 별도시험장으로 이동 시에는 아래의 「코로나19 격리자 시험 응시 유의사항」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※ 시험응시자는 외출 시 우정9급(계리) 채용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지참

코로나19 격리자 시험응시 유의사항

◦ 대중교통이용은 불가하며, 개인차량·방역택시 등을 이용합니다.

◦ 자차 이동 시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 1인(예방접종 완료자)만 동행합니다.
-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(운전자와 대각선)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.
-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,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.

◦ 자가격리 장소(집)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(KF94 동급 이상)를 착용하고, 외출 중 절대 벗지 않으며, 손위생을 위해 필요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.

◦ 이동 중 식당, 휴게소,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,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, 바로 시험장으로 이동합니다.

◦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격리자 전용 화장실만 이용해 주세요.

◦ 고사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,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.

◦ 고사장 전과 후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철저히 합니다.

◦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,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.

※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붙임1 코로나19 대응 응시자 행동 수칙

<코로나19 대응 응시자 행동수칙>

▼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,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, 개인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.

※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

▼ 발열(37.5도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시험관리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 응시

▼ 시험장 안팎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▼ 대기시간 등에도 다른 응시자와 1.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▼ 개인 필기구, 음료수를 개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
▼ 응시자는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,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.

▼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휴지, 마스크, 덧신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,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

▼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(코·입 노출 금지)해야 하며, 시험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.

▼ 시험종료 후 퇴실 시 수험생 밀집으로 인한 감염예방을 위해 저층부터 순차적으로 퇴실할 예정이오니, 수험생들은 시험실에서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질서있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▼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7일간 발열,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(☎1339, 지역번호+120)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